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03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 남인순 • 문진석 • 모경종

서미화 • 윤종군 • 진선미

김현정 · 신정훈 · 이해식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 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 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5. 여성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 ④ 제2항에 따른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년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2. 청년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3. 청년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4. 청년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5. 그 밖에 청년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제29조제3호 중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	②
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	
의 설치 • 운영)에 의한 정책연	
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	
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u><후단 삭제></u>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	
<u>다.</u>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u><삭 제></u>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u><삭 제></u>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	<u><삭 제></u>
<u>련 경비</u>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	<u><</u> 삭 제>

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5.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 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 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 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경비

<신 설>

<삭 제>

<삭 제>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 런 경비
-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5.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 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 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경비
- ④ 제2항에 따른 청년정치발전 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u><신</u>설>

③ • ④ (생 략)

-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 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 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1. 2. (생략)
 - 3. <u>제28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 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

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١	구.				

- 1. 청년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2. 청년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3. 청년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4. 청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5. 그 밖에 청년정치발전에 필 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 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경비
- <u>⑤</u>· <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1. 2. (현행과 같음)
- 3. <u>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

- 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4. <u>제28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 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 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 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생 략)
-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1. ~ 3. (생략)
 -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자
 - 5. ~ 13. (생략)
 - ② 제28조제4항·제42조제7항 또는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 사 등)제1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 사·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4. <u>제28조제5항</u>
5. (현행과 같음)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u>.</u>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부터 제5항까지
5. ~ 13. (현행과 같음)
② <u>제28조제6항</u>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